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2. 22(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2. 5

나. 제 출 자 : 이한구 의원(대표발의), 박영애 의원(찬성자 5인)

다. 회부일자 : 2014. 12. 5

라. 상정일자 : 2014. 12. 17 (제22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이한구 의원

○ 검토보고: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마. 의결일자 : 2014. 12. 17 (제22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인체조직의 수 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인체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 조한 실정이며, 현행 조례에서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지원 등 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며 장기등의 기증과 달리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장려정책이 부족함.

○ 이에 따라 장기등과 더불어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4조)
-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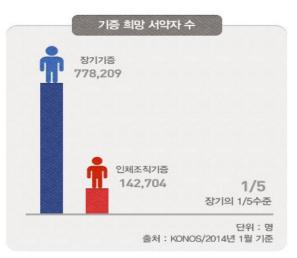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등 기증 장려사항에 대해서만 담고 있고 인체조직 관련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개선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 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 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 문화 확산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해마다 인체조직 및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크게 늘고 있으나 기증률은 저조한 수준임. 장기의 경우 2013년말 현재 2만 6,036명¹)의 대기자가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기증자는 2,250명 (뇌사자 416명, 생존 1,834명)으로 대기자의 사망이 속출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의 기증율은 장기에 비해 1/5 수준으로 2012년한 해 30만여 건의 인체조직이 유통되었으나 국내 수요 79%²)를 수입에 의존해 안전성 우려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이 식대기자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시민 보건을 저해하기에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할 필요 가 있음.

^{1) 2014}년 7월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발표

^{2) 2013}년 12월 식약처 발표

나. 주요 내용

□ 제명 개정 및 안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인 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	현 행	전부개정(안)
목 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 제3조로 이동
	제3조(정의)	제2조(정의)
다른 법령 과의 관계	〈제2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접수창구 설 치	제4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안 제6조로 이동
사업계획	〈제6조(지원계획 등)〉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위 원 회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등)	안 제4조로 이동
접수창구	제7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 기증 접수창구 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 영)
예 우	제8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홍 보	〈신설〉	제8조(홍보)
홍보대사	제9조(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등)	제9조(홍보대사 위촉)
자원봉사 활동지원	〈신설〉	제10조(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T 4	〈신설〉	제2조(경과조치)

- 안 제1조 목적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 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향 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 장기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장기이식법)'에 따라 사람의 내장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인체조직법)'에서 장기등을 제외한 9종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구 분	장 기	인체조직
종류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13종)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9종)
기증대상	생존, 뇌사	생존, 뇌사, 사후
이식목적	생명유지	신체 완전성, 생리적 기능 회복
이식대상	소수	불특정다수(수백명 가능)
상품화	어려움	용이(특히 뼈, 피부)
보관기간	단기(평균2일)	장기(최장5년)
처리시 오염기능성	낮음	높음
면역거부 반 응	있음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매칭 필요)	거의 없음 (불특정 다수 이식)
주 요 공급방식	국내기증	해외수입(약76%)
관련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일시	1999.2.8	2004.1.20

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 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 목 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 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 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 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장기이식법은 1999년 제정된 것에 비해 인체조직법은 뒤늦게 2004년에야 제정되었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설문조 사3)에 따르면 헌혈의 인지도는 98.7%, 장기기증은 99.3%, 조혈 모세포(골수)기증은 87.1%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인체조직에 대한 인지도는 39.1%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국민적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절차가 분리돼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장기기증은 장기이식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증부터 배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법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단계까지는 보건 복지부, 채취 이후 단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 음.4)
- 본 개정안은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내용 중 적출, 이식 등

^{3) 2013}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전국 만20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⁴⁾ 미국은 1968년부터 이식·치료·연구·교육의 네 가지 목적에 한해 사후에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 기증 하는 내용을 담은 사체기증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03년부터 이식을 위한 세포, 인 체조직, 장기의 통합 운영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음.

의학적 기술이 필요하기 전단계인 기증자의 등록 및 관리의 단계까지만 다루고 있으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및 상담, 예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두 법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인체조직에 대한 내용만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임.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안 제6조의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과 관련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에 대해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희망자가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로 규정하고 있음.
 - "등록 및 접수창구"는 장기이식법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야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의 용어에 대해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나,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하위규범이고, 다른 조례의 적용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함이 타당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은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 그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음.

□ 안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 안 제4조에서는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 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 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개별세부사업계획 항목에 시·도마다 특수시책 또는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할 것임.
 -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사업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기증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개정일	시·도명	제명	비고
2014.3.20.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인체조직 미포함, 사업계획 미수립
2013.10.30. (개정)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매년 사업계획 수립
2011.11.10 (제정)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매년 사업계획 수립
2011.04.01 (제정)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조례	인체조직 미포함, 매년 사업계획 수립
2012.04.13 (제정)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인체조직 미포함,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
2012.05.24 (제정)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매년 사업계획 수립
2012.01.05 (개정)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

□ 안 제5조(위원회 설치)

- 안 제5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 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위임으로 판단되고 위원회의 구성 과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5)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

⁵⁾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 난립을 예방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중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 안 제6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6)에 따라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 제2조(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례상의 용어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으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⁶⁾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1.}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에 통보하는 업무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 ·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장기등록기관으로는 전국 374개중 인천은 9개소⁷⁾가 지정 되어있으며, 인체조직 관련기관⁸⁾은 전국 2개소로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
- 한편,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의 보건소(그중 2개소는 구청 지정)와 서울특별시청이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은 자치구·군 보건소 16개소 전부 장기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점을 참고하여 인천시에서도 기증을 희망하는 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청 또는 군·구청, 보건소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체조직기증자 등록기관은 인체조직법 제7조의39) 제4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조례상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예우 및 지원)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시설 진료비 감 면, 시설물의 각종 감면 이외에 추가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⁷⁾ 인천남부의원(경찰공제회), 사단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준승내과의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하대학 교의과대학부속병원, 가천의대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 병원

^{8)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⁹⁾ 제7조의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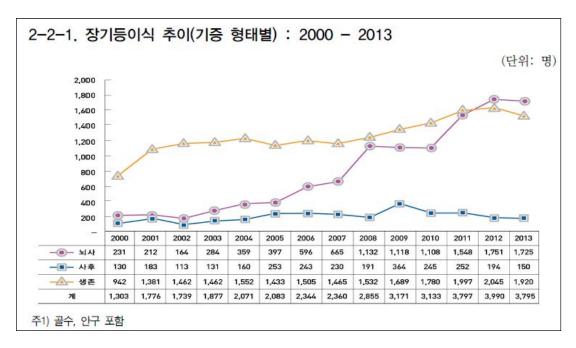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

^{3.}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관리료 감면과 기증자의 사망에 대해 사망위로금 지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재 기증형태별 장기등 이식 추이¹⁰⁾를 보면 뇌사자의 장기기증 율이 상승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과 사 망위로금의 지급은 실질적인 예우가 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를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로 규정하였으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는 상이한 점이 있음.
 - 장기이식법의 경우 '기증자'는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신체

^{10) 2013}년도 장기이식 통계연보(2014.7월,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검사 필요)으로서, 장기등의 이식 또는 적출이 완료된 사람과 기증 대기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기증희망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신체검사 불필요)을 말함.

-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사용한 "기증희망등록자"는 "기증희망자" 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증자와 달리 기증희망자까지 예 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 6-1-1, 장기등기	기증희망자 - 연도별	(단위: 명)
연도	당해 누계	취소&사망	당해 등록자
2009	602,675	3,202	185,046
2010	722,207	4,846	124,378
2011	813,655	3,473	94,921
2012	898,295	3,603	88,243
2013	1,054,473	3,861	160,039

- 또한, 감면의 요율이 없어 조례의 시행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감면요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세부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및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 대상자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질병관리본부 예규상에는 장기를 적출한 병원에서 국립장기기증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장기등 적출 통보서'만 있을 뿐 해당 민원 에게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는 없어 혼선이 야기되고, 병 원의 진단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으로 기증 사실을 확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식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을 삭제하고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위로금의 금액은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명시된 한도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오인하는 등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조례로 금액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¹¹⁾는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음.

□ 안 제8조(홍보)

¹¹⁾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2011.3), 행정안전부

○ 안 제8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를 의무화하면서 홍보매체를 열거하였으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는 누락하는 등 오히려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일부 매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홍보매체에 대한 열거는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홍보를 추진할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0조(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단체 또는 자 원봉사자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사 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규 정되어있고, 동 조례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는 포 상과 보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자치법규를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2011.11.17일 제

정·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접수창구 설치, 홍보대사 위촉, 위원 회 설치 등에 대해 추진된 사례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공병건, 임정빈, 조계자, 황흥구 위원
 - 장기기증등록자와 기증희망자는 얼마나 되는지, 기증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어떠한가?
 - 기증희망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장기간 주었는데, 유족의 반대로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답변〉

- 김상섭 보건복지국장, 이한구 의원
 - 인천의 등록현황은 누계로 기증등록자는 1,300여명, 기증희망자까지 6만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음.
 - 기증자에 경우 진료비, 장제비, 사망위로금을 각 180만원까지, 총 540만원까지 지원함.
 - 살아있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마치고 부적합의 사유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진료비는 지원하는 등 사례별 지원사항 에 대해 법령에서 언급되어 있음.
 -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기증희망자까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겠지만, 장기간 혜택만 받다가 사망 시에는 유족의 반대로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기증희망자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적인 부분 도 고려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기증자

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기증에 대한 조례는 있었지만 인체조직에 대한 부분은 없었 기에 한 조례로 묶어 기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며, 지원의 중복 성 여부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으로 변경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을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이한구·박영애·공병건·임정빈·조계자·황흥구 위원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 이한구·박영애·공병건·임정빈·조계자·황흥구 위원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 3.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기 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곳을 말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중 "법령과"를 "조례와"로 하고, 본문 중 "법령"을 "다른 조례"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위원회 설치"에서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 4. 그 밖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안 제6조의 제목을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에서 "장기이식등록 기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으로 하며, 제2항 중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및 기증희망 등록자"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및 기증희망 등록자"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중 "자원봉사"를 "기증장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봉사"를 "기증장려"와 "비영리민간"으로 하며, 제2항 중 "자 원봉사"를 "기증장려"로 하고, 같은 항 본문 하단 중 "및 「인천광역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삭제하며, 제3항 중 "개인 또는" 뒤 에 "기관 및"을 추가한다.

안 부칙 제2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등록 및 접수창구 와"를 "장기이식등록기관과"로 하며, "각각"을 삭제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록 및 접수창구"란 인체조직 및 장기등 의 기증희망자가 기증을 편리하게 신	
제3조(다른 <u>법령과</u> 의 관계)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u>법</u> 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른 조례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u>해</u>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 <u>(설치 및 기능)</u> ① (개정안과 같 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안	수정안
③ <신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u>등록 및 접</u> 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u>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u>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체 	
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조직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사 망에 대한 위로금 지급 5. (생략)	
② 제1항제4호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 중에서인체조직 및 장기등 이식 의료기관에서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전부개정안	수정안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u>④ <신설></u>	③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감면요율 등 세 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u>다음 각호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제4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u>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 ③ (생략)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 ③ (개정 안과 같음)
원) 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	<u>기증장려</u>
② <u>자원봉사</u> 활동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전부개정안	수정안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 는 <u>〈삽입〉</u>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u>의하여</u> 설치되거나 위촉된 <u>등록 및 접수창구와</u> 위원회 위원 및 홍 보대사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u>각각</u> 설치되 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u>따라</u>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제3조<신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 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기 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2.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 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 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군수 · 구청장에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권

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 료의 감면
 -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스포츠 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기증 장려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기증장려활동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 촉된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위원회 위원 및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